

부산장안지구 중흥S-클래스 사전공급계약 구비서류 안내문

※ 사전서류접수기간 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미비 사전당첨자는 사전공급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 및 미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사전공급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사전공급계약 체결안내

- 모든 계약체결서류는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1. 11. 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필수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사전공급계약 체결기간 내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공급계약 체결기간 내 방문 예약된 일시에만 사전당첨자 본인 외 동반1인까지(대리인 접수 가능) 출입이 가능하며, 임산부, 노약자 및 만성질환 환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대리인을 통하여 서류접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공급계약 체결일정 및 장소

구분	사전공급계약 체결일정	사전공급계약 체결장소
사전공급계약 체결	2022. 01. 05. (수) ~ 2022. 01. 14. (금) 10일간, 10:00 ~ 16:00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391-3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 사전공급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발급분에 한 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대리인 계약불가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당첨유형별 자격검증서류 일체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전당첨자가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을 못한 경우
	추가 개별 통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주체가 적격여부를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본인계약시 구비서류" 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기 구비서류 참고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재외동포,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전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접수장소 비치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사본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 사전공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부산 장안지구 중흥S-클래스" 사전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금액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향후 본청약 시 분양가가 확정되며, 계약금 및 별도의 금액은 최종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 사전공급계약자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된 주택 수 조건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 추가 소유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사전공급계약자와 세대 구성원은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각종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적용 제한 등)은 최종 공급 계약 의사를 확정 동의한 사전공급계약자에 한하여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실제 최종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사전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사전당첨으로 사전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사전당첨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사업주체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공급계약자는 최종 공급 계약 체결 의사 확인 기간까지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당첨자 명단 제외 및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사전당첨지위 포기 및 부적격 등 잔여물량은 향후 본청약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급됩니다.
- 상기 안내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